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29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관광진흥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2-2번지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설치(표지판 설치)	점용 면적	○ 계속: 1.00m <sup>2</sup>
점용 기간	○ 계속: 2022. 10. 1.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1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건설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단장골길1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20번지 외 1개소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설치	점용 면적	○ 계속: 324.9m <sup>2</sup>
점용 기간	○ 계속: 2022. 10. 6. ~ 2027.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 갯골1길 28 외 281건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 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0.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갯골1길2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86-2	2022-10-06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고현로139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04-4	2022-10-06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5	2022-10-06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5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15	2022-10-06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15-5	2022-10-06	건축물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15-5	2022-10-06	건축물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8-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16-5	2022-10-06	건축물 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8-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16-1	2022-10-06	건축물 멸실	
9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8-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15-1	2022-10-06	건축물 멸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9-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34	2022-10-06	건축물 멸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9-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36	2022-10-06	건축물 멸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9-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31	2022-10-06	건축물 멸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79-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37	2022-10-06	건축물 멸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51	2022-10-06	건축물 멸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39	2022-10-06	건축물 멸실	
16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0	2022-10-06	건축물 멸실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4	2022-10-06	건축물 멸실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3	2022-10-06	건축물 멸실	
19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2	2022-10-06	건축물 멸실	
20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7	2022-10-06	건축물 멸실	
21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41	2022-10-06	건축물 멸실	
22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50	2022-10-06	건축물 멸실	
23	울산광역시 북구	공단길8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86-2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94-7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693-1	2022-10-06	건축물 멸실	
25	울산광역시 북구	농공단지1길10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6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71-34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433-5	2022-10-06	건축물 멸실	
27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326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44	2022-10-06	건축물 멸실	
28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369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114	2022-10-06	건축물 멸실	
29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481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589	2022-10-06	건축물 멸실	
30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2길29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605	2022-10-06	건축물 멸실	
31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166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20-2	2022-10-06	건축물 멸실	
32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3길18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41-28	2022-10-06	건축물 멸실	
33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19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41-1	2022-10-06	건축물 멸실	
3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4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45-2	2022-10-06	건축물 멸실	
3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9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30	2022-10-06	건축물 멸실	
36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831-3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55-2	2022-10-06	건축물 멸실	

		7					
37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1884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산 24-1	2022-10-06	건축물	멸실
38	울산광역시 북구	마동안길51-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9	2022-10-06	건축물	멸실
39	울산광역시 북구	마동안길5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197-2	2022-10-06	건축물	멸실
4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9-3	2022-10-06	건축물	멸실
4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1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40-4	2022-10-06	건축물	멸실
4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7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223	2022-10-06	건축물	멸실
4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320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31-6	2022-10-06	건축물	멸실
4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44-1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60	2022-10-06	건축물	멸실
4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63-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00-7	2022-10-06	건축물	멸실
4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6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00-1	2022-10-06	건축물	멸실
4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73-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03-3	2022-10-06	건축물	멸실
4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73-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6-4	2022-10-06	건축물	멸실
4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73-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9-1	2022-10-06	건축물	멸실
5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73-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02-3	2022-10-06	건축물	멸실
5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8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7	2022-10-06	건축물	멸실
5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8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2-8	2022-10-06	건축물	멸실
5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8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2-3	2022-10-06	건축물	멸실
5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8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622-16	2022-10-06	건축물	멸실
5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95-1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6	2022-10-06	건축물	멸실

5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95-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54	2022-10-06	건축물 멸실	
5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95-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7	2022-10-06	건축물 멸실	
58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95-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12	2022-10-06	건축물 멸실	
5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9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10	2022-10-06	건축물 멸실	
6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101-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23-9	2022-10-06	건축물 멸실	
61	울산광역시 북구	산성로7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37-3	2022-10-06	건축물 멸실	
6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17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0-2	2022-10-06	건축물 멸실	
6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53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0-20	2022-10-06	건축물 멸실	
6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64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97-4	2022-10-06	건축물 멸실	
65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65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97-4	2022-10-06	건축물 멸실	
6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66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29-1	2022-10-06	건축물 멸실	
67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4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43	2022-10-06	건축물 멸실	
68	울산광역시 북구	성골길18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85	2022-10-06	건축물 멸실	
69	울산광역시 북구	성골길20-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85	2022-10-06	건축물 멸실	
70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1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7-3	2022-10-06	건축물 멸실	
71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1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7-5	2022-10-06	건축물 멸실	
72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2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10	2022-10-06	건축물 멸실	
73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2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7	2022-10-06	건축물 멸실	
74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2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6	2022-10-06	건축물 멸실	
75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26-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8	2022-10-06	건축물 멸실	

76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26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500-10	2022-10-06	건축물 멸실	
77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28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500-14	2022-10-06	건축물 멸실	
78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32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35	2022-10-06	건축물 멸실	
79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38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32-5	2022-10-06	건축물 멸실	
80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40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32-1	2022-10-06	건축물 멸실	
81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42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27-6	2022-10-06	건축물 멸실	
82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44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41-3	2022-10-06	건축물 멸실	
83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46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27-6	2022-10-06	건축물 멸실	
84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68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85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69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769-8	2022-10-06	건축물 멸실	
86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70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07-3	2022-10-06	건축물 멸실	
87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72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05-3	2022-10-06	건축물 멸실	
88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74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957-4	2022-10-06	건축물 멸실	
89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78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758-4	2022-10-06	건축물 멸실	
90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80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757-5	2022-10-06	건축물 멸실	
91	울산광역시 복구	송도길82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757-1	2022-10-06	건축물 멸실	
92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길143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25	2022-10-06	건축물 멸실	
93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길145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24	2022-10-06	건축물 멸실	
94	울산광역시 복구	신전길55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144	2022-10-06	건축물 멸실	
95	울산광역시 복구	아름1길28-8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56	2022-10-06	건축물 멸실	

96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1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992-6	2022-10-06	건축물 멸실	
97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66-14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178-37	2022-10-06	건축물 멸실	
98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66-12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178-37	2022-10-06	건축물 멸실	
99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66-10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178-37	2022-10-06	건축물 멸실	
100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66-8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178-37	2022-10-06	건축물 멸실	
101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66-6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000-19	2022-10-06	건축물 멸실	
102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9길2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031	2022-10-06	건축물 멸실	
103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223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동 920-1	2022-10-06	건축물 멸실	
104	울산광역시 복구	용바위1길36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499	2022-10-06	건축물 멸실	
105	울산광역시 복구	우가1길38	울산광역시 복구	당사동 126-10	2022-10-06	건축물 멸실	
106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1길13-1 6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744	2022-10-06	건축물 멸실	
107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1길13-1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808-1	2022-10-06	건축물 멸실	
108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27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669-1	2022-10-06	건축물 멸실	
109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31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666-5	2022-10-06	건축물 멸실	
110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32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699	2022-10-06	건축물 멸실	
111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34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679-3	2022-10-06	건축물 멸실	
112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61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69-3	2022-10-06	건축물 멸실	
113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62-1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29-2	2022-10-06	건축물 멸실	
114	울산광역시 복구	원연암2길62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29-1	2022-10-06	건축물 멸실	
115	울산광역시 복구	원지제방길222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36-6	2022-10-06	건축물 멸실	

116	울산광역시 북구	원지제방길223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6-3	2022-10-06	건축물 멸실	
117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3-1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65	2022-10-06	건축물 멸실	
118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10-8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92-5	2022-10-06	건축물 멸실	
119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16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85-2	2022-10-06	건축물 멸실	
120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18-9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94	2022-10-06	건축물 멸실	
121	울산광역시 북구	저수지길8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238-1	2022-10-06	건축물 멸실	
122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8-2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52-5	2022-10-06	건축물 멸실	
123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10-6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97	2022-10-06	건축물 멸실	
124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10-4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98	2022-10-06	건축물 멸실	
125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10-1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52-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26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4-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27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4-39	2022-10-06	건축물 멸실	
128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39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2-4	2022-10-06	건축물 멸실	
129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78-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85	2022-10-06	건축물 멸실	
13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6길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35-1	2022-10-06	건축물 멸실	
131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1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09-1	2022-10-06	건축물 멸실	
132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3길2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03-6	2022-10-06	건축물 멸실	
133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47-2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48-1	2022-10-06	건축물 멸실	
134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47-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78	2022-10-06	건축물 멸실	
135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4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8-36	2022-10-06	건축물 멸실	

136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50-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8-19	2022-10-06	건축물 멸실	
137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52-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8-23	2022-10-06	건축물 멸실	
138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58-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9-9	2022-10-06	건축물 멸실	
139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6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66-1	2022-10-06	건축물 멸실	
14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96-2	2022-10-06	건축물 멸실	
14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3-5	2022-10-06	건축물 멸실	
14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8-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4-9	2022-10-06	건축물 멸실	
14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52-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0	2022-10-06	건축물 멸실	
14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16-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78-8	2022-10-06	건축물 멸실	
14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95-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73-2	2022-10-06	건축물 멸실	
14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9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36-120	2022-10-06	건축물 멸실	
14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105-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7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4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125-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41-2	2022-10-06	건축물 멸실	
14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2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8-13	2022-10-06	건축물 멸실	
15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19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54-1	2022-10-06	건축물 멸실	
15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31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5-18	2022-10-06	건축물 멸실	
15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34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15-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53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길58-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57	2022-10-06	건축물 멸실	
154	울산광역시 북구	항토전길134-10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155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1길2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59-25	2022-10-06	건축물 멸실	

156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1길3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0-5	2022-10-06	건축물 멸실	
157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1길3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0-9	2022-10-06	건축물 멸실	
158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1길4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69	2022-10-06	건축물 멸실	
159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59-14	2022-10-06	건축물 멸실	
160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04-5	2022-10-06	건축물 멸실	
161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6-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04-3	2022-10-06	건축물 멸실	
162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6-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02-1	2022-10-06	건축물 멸실	
163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3-7	2022-10-06	건축물 멸실	
164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65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1-4	2022-10-06	건축물 멸실	
166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1	2022-10-06	건축물 멸실	
167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3-1	2022-10-06	건축물 멸실	
168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4	2022-10-06	건축물 멸실	
169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5-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3-3	2022-10-06	건축물 멸실	
170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5	2022-10-06	건축물 멸실	
171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1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98-3	2022-10-06	건축물 멸실	
172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21-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80	2022-10-06	건축물 멸실	
173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21-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6	2022-10-06	건축물 멸실	
174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2길2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77	2022-10-06	건축물 멸실	
175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27-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4-3	2022-10-06	건축물 멸실	

176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2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4-2	2022-10-06	건축물 멸실	
177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2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4-1	2022-10-06	건축물 멸실	
178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3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5-3	2022-10-06	건축물 멸실	
179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3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5-5	2022-10-06	건축물 멸실	
180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3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5-5	2022-10-06	건축물 멸실	
181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3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5-1	2022-10-06	건축물 멸실	
182	울산광역시 북구	효산3길3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18	2022-10-06	건축물 멸실	
183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20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909	2022-10-06	건축물 멸실	
184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46-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42	2022-10-06	건축물 멸실	
185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2	2022-10-06	건축물 멸실	
186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187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1	2022-10-06	건축물 멸실	
188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0	2022-10-06	건축물 멸실	
189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3	2022-10-06	건축물 멸실	
190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6	2022-10-06	건축물 멸실	
191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5	2022-10-06	건축물 멸실	
192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1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4	2022-10-06	건축물 멸실	
193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15-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6	2022-10-06	건축물 멸실	
194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1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5	2022-10-06	건축물 멸실	
195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1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3	2022-10-06	건축물 멸실	

196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2	2022-10-06	건축물 멸실	
197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25-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9	2022-10-06	건축물 멸실	
198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2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0	2022-10-06	건축물 멸실	
199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2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1	2022-10-06	건축물 멸실	
200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2-1	2022-10-06	건축물 멸실	
201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8-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2-2	2022-10-06	건축물 멸실	
202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3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2-5	2022-10-06	건축물 멸실	
203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5	2022-10-06	건축물 멸실	
204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2-3	2022-10-06	건축물 멸실	
205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9	2022-10-06	건축물 멸실	
206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88	2022-10-06	건축물 멸실	
207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77	2022-10-06	건축물 멸실	
208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0-2	2022-10-06	건축물 멸실	
209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6-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3	2022-10-06	건축물 멸실	
210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1길4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2	2022-10-06	건축물 멸실	
211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5-1	2022-10-06	건축물 멸실	
212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13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14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0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15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8-4	2022-10-06	건축물 멸실	

216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1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8-3	2022-10-06	건축물 멸실	
217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1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8-5	2022-10-06	건축물 멸실	
218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1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19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2길1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3-1	2022-10-06	건축물 멸실	
220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4길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62-5	2022-10-06	건축물 멸실	
221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4	2022-10-06	건축물 멸실	
222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20	2022-10-06	건축물 멸실	
223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17	2022-10-06	건축물 멸실	
224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5-9	2022-10-06	건축물 멸실	
225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4-3	2022-10-06	건축물 멸실	
226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4-2	2022-10-06	건축물 멸실	
227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5-3	2022-10-06	건축물 멸실	
228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1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5-7	2022-10-06	건축물 멸실	
229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5-2	2022-10-06	건축물 멸실	
230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7-3	2022-10-06	건축물 멸실	
231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6-2	2022-10-06	건축물 멸실	
232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3	2022-10-06	건축물 멸실	
233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2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3-2	2022-10-06	건축물 멸실	
234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7-4	2022-10-06	건축물 멸실	
235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6-3	2022-10-06	건축물 멸실	

236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06-1	2022-10-06	건축물 멸실	
237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2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5	2022-10-06	건축물 멸실	
238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2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9-2	2022-10-06	건축물 멸실	
239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2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0	2022-10-06	건축물 멸실	
24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2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00-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1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3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2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3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20-4	2022-10-06	건축물 멸실	
243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3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20-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4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4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9-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5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0-2	2022-10-06	건축물 멸실	
246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0-1	2022-10-06	건축물 멸실	
247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3	2022-10-06	건축물 멸실	
248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9	2022-10-06	건축물 멸실	
249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6	2022-10-06	건축물 멸실	
25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8	2022-10-06	건축물 멸실	
251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7-2	2022-10-06	건축물 멸실	
252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5	2022-10-06	건축물 멸실	
253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3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54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1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4-2	2022-10-06	건축물 멸실	
255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2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50	2022-10-06	건축물 멸실	

256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3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6	2022-10-06	건축물 멸실	
257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3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2	2022-10-06	건축물 멸실	
258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3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48-3	2022-10-06	건축물 멸실	
259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4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4	2022-10-06	건축물 멸실	
26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4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9-2	2022-10-06	건축물 멸실	
261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4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8	2022-10-06	건축물 멸실	
262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4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15	2022-10-06	건축물 멸실	
263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7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9	2022-10-06	건축물 멸실	
264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7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8	2022-10-06	건축물 멸실	
265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7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0-4	2022-10-06	건축물 멸실	
266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2길91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7-1	2022-10-06	건축물 멸실	
267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2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95	2022-10-06	건축물 멸실	
268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2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94	2022-10-06	건축물 멸실	
269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3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7	2022-10-06	건축물 멸실	
27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4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1	2022-10-06	건축물 멸실	
271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6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2	2022-10-06	건축물 멸실	
272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8	2022-10-06	건축물 멸실	
273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8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83	2022-10-06	건축물 멸실	
274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39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69	2022-10-06	건축물 멸실	
275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3길40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479-5	2022-10-06	건축물 멸실	

276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41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72	2022-10-06	건축물 멸실	
277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43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73	2022-10-06	건축물 멸실	
278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44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79-3	2022-10-06	건축물 멸실	
279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45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85	2022-10-06	건축물 멸실	
280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49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75	2022-10-06	건축물 멸실	
281	울산광역시 복구	효천3길51	울산광역시 복구	효문동 479-4	2022-10-06	건축물 멸실	
282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 42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1009-4	2022-10-06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2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농작물 수확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나.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

#### 3.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 052-241-7775, 팩스 : 052-241-7769, E-mail : dhgo3476@korea.kr)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친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방지단원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방지단에서 제외한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

3.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농업인”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 제2호----- ----- -----.</p> <p>4.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p> <p><u>제11조(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u> ① <u>구청장은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u></p>

<p><u>제11조</u> (생 략)</p>	<p><u>받은 사실이 확인된 방지단원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방지단에서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u></li> <li>2. <u>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u></li> <li>3. <u>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u></li> <li>4.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u></li> </ol>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

## 근 거 법 령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  
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  
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군·구별로 각 하나의 수  
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  
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11.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여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공업9급 고대훈(241-7775)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22호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15.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1-9번지	김**	조정혜순(혜순면적 10.1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70,000
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25-4번지	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176,000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22호

#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 A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9. 30.(금) ~ 2022. 10. 7.(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울산시 북구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A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도형건설 다. 시 공 자 : (주)시에이치건설 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33-3 ○ 대지면적 : 1,192.6㎡ ○ 연 면 적 : 4,997.755㎡ ○ 규 모 : 지하1층 - 지상8층 ○ 세 대 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2.09.30.~2023.08.30.(11개월) ○ 허 가 일 : 2022. 08.19. ○ 착공신고수리일 : 2022. 10. 11. ○ 공 사 비 : 4,488,000,000원	○ 기초금액 : 15,0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b>사. 안전점검비용</b> ○ 안전점검비용 : 15,000,000원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10	15,000,000	15,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10		15,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9. 30.(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0. 7.(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0. 7.(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0. 7.(금) 17: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0. 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25호

#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 B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6. 17.(금) ~ 2022. 06. 28.(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울산시 복구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B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시에이치건설 다. 시 공 자 : (주)시에이치건설 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233-4 ○ 대지면적 : 1,192.7㎡ ○ 연 면 적 : 4,997.755㎡ ○ 규 모 : 지하1층 - 지상8층 ○ 세 대 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2.09.30.~2023.08.30.(11개월) ○ 허 가 일 : 2022. 08.19. ○ 착공신고수리일 : 2022. 10. 11. ○ 공 사 비 : 4,938,000,000원	○ 기초금액 : 9,0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9,000,000원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6	9,000,000	9,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6		9,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9. 30.(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0. 7.(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0. 7.(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0. 7.(금) 17: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0. 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26호

#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 C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9. 30.(금) ~ 2022. 10. 7.(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울산시 북구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C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대명하우징</p> <p>다. 시 공 자 : (주)시에이치건설</p> <p>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p> <p>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33-7</li> <li>○ 대지면적 : 1,192.7㎡</li> <li>○ 연 면 적 : 4,997.755㎡</li> <li>○ 규 모 : 지하1층 - 지상8층</li> <li>○ 세 대 수 :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 공사기간 : 2022.09.30.~2023.08.30.(11개월)</li> <li>○ 허 가 일 : 2022. 08.19.</li> <li>○ 착공신고수리일 : 2022. 10. 11.</li> <li>○ 공 사 비 : 4,488,000,000원</li> </ul>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비용 : 15,00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금액 : 15,000,000원</li> <li>○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li> </ul>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10	15,000,000	15,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10		15,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9. 30.(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0. 7.(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0. 7.(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0. 7.(금) 17: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0. 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27호

# 송정동 라비에르 스퀘어 D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9. 30.(금) ~ 2022. 10. 5.(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업명 : 울산시 복구 송정동 라비에르스퀘어-D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도형건설 다. 시 공 자 : (주)시에이치건설 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아키원 바.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233-8 ○ 대지면적 : 1,192.6㎡ ○ 연 면 적 : 4,997.755㎡ ○ 규 모 : 지하1층 - 지상8층 ○ 세 대 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2022.09.30.~2023.08.30.(11개월) ○ 허 가 일 : 2022. 08.19. ○ 착공신고수리일 : 2022. 10. 11. ○ 공 사 비 : 4,488,000,000원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9,000,000원	○ 기초금액 : 9,0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안전점검	6	9,000,000	9,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계	6		9,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9. 30.(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0. 7.(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0. 7.(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0. 7.(금) 17: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0. 11.(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40호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6. 14.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원사업 (안 제7조)
- 마.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제12조)
- 바. 포상 (안 제14조)

### 3. 근거법령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6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복지지원과  
(전화 : 052-241-7601, 팩스 : 052-241-7609, E-mail : yimcg2001@korea.kr)

### 5. 기타사항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

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2. 21.]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4.]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7. (생 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 ⑤ (생 략)

# 울산광역시 복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해 연간 소요예산이 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복구 복지지원과 행정6급 임춘근(241-7601)

## 참고

## 소요예산(안)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소요 예산	산출근거	비고
계		24		
위원회 운영	회의운영비	1	· 8명 × 2회 × 70,000원	연 2회 (정기1, 수시1)
지원사업(예시)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지킴이 사업(안)	23	· 232명* × 200,000원*1/2	

## 1)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지킴이 사업(안)

- 대 상 :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근무 중인 정규직 종사자
- 지원기준 : 복구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합산 근무기간 3년이상 종사자
- 지원규모 : 1인 200천원(격년 지원, 종합검진 지원 시)
- 소요예산 : 200,000원×232명×1/2=23,200,000원

## 2) 보건복지부 기준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56개소 386명)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3년이상 근무자: 232명)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60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지정 신설(안 제5조제2항)
- 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설(안 제5조제3항)
-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8조 ~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3. 근거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 052-241-7774, 팩스 : 052-241-7769, E-mail : pjw9936@korea.kr)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친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비상벨(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기계장치)
2. 안심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5조(설치기준) ① 「<u>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 -----</p> <p>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은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벨(위급상황 발생 시 관찰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기계장치)</li> <li>2. 안심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li> </ol>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

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공중화장실 등-----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

장실 등-----  
-----  
-----  
-----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에 따른  
-----  
-----  
-----  
-----  
-----

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  
 ----- 영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법 제21조에 따른  
 -----  
 -----  
 -----  
 -----.

## 관계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

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2023. 7.

21. 시행>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 ③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여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8급 박진욱(241-7774)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